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9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김영환 · 한준호 · 윤종근
정태호 · 김 윤 · 복기왕
장철민 · 허 영 · 한민수
김태선 · 박 정 · 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

다만, 제작 중인 간행물 등(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 관련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제2호가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다.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수험서·

학습 참고서, 정기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은 제외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u>영상콘텐츠</u>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 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영 상콘텐츠</u> (이하 이 조에서 “ <u>영 상콘텐츠</u> ”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하 이 조에서 “ <u>영상콘텐 츠 제작비용</u> ”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영상콘텐츠</u> 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6(<u>문화콘텐츠</u>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문 <u>화콘텐츠</u> -----문 <u>화콘텐츠</u> ----- ----- ----- ----- <u>문화콘텐 츠</u> ----- ----- ----- ----- <u>문화콘텐츠</u> -----「소비 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소비자에게</u> ----- ----- ----- ----- ----- ----- ----- <u>다만, 제작 중</u>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 다. (생략)

<신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인 간행물 등(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 관련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제2호가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문화콘텐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수험서·학습 참고서, 정기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은 제외한다)

2. -----

가. -----문

화콘텐츠-----

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

나. -----

---문화콘텐츠-----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콘

텐츠-----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문화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u>영상콘텐츠</u>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해당 <u>영상콘텐츠</u>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③ (생략)	----- ----- ----- ----- -----<u>문화콘텐츠</u>----- ----- ----- ----- ----- ----- 1. (현행과 같음) 2. -----<u>문화콘텐츠</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